

선금보증보험증권

(인터넷 발급용)

증권번호 제 100-000-2024 0292 7241 호

기본사항

보험계약자	417-70-01307 761009-1***** TK트래블 강일구	피보험자	211-82-11699 (사단)한국관광개발연구원
보험가입금액	금 일천오십육만 원정 ₩10,560,000-	보험료	₩85,420- ■ 일시납 □ 분납
보험기간	2024년 06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187 일간)		

보증하는 사항

보증내용	선금 반환보증
특별약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본 증권에 첨부되어 있는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기사항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지급(예정)된 최초 선금만을 담보하며, 해당 선금의 반환 사유가 보험기간 내에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보험책임을 부담합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내용] 주계약명 2024 인바운드 전문기업 지방관광 특화상품 개발 및 운영 계약기간 2024년 06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 ₩26,400,000- 선금금액 ₩10,560,000- 지급예정일자

알아두셔야 할 사항

1. '보증보험증권으로 보증하는 내용'이 '주계약상 보증이 필요한 내용'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증권발급사실 및 보험약관, 보상심사 진행사항은 회사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는 선금보증보험 보통약관, 특별약관 및 이 증권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선금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실하므로 그 증으로 이 증권을 발행합니다. 본 증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내부통제 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증권 발급	대리점	대리점명 (주)인슈게이트
	모집자 고유번호	박혜경 20090658090008 (02-2051-2114)
지점	역삼지점	김효녀 02-569-0041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203 12층 (역삼동, 서울인터내셔널타워)	

2024년 07월 01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 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이영준**

사 장

대한민국 정부 인지세 200원
종로세무서장
인쇄승인 제2003-1호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ISO 37301 준법경영시스템
ISO 37001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한국경영인협회 인증기업

보험약관 주요내용

※ 세부사항은 보험약관의 적용을 받으므로, 보험약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상하는 손해]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합니다)는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여 보증받은 '계약상 채무' 또는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피보험자가 반환받아야 할 선금(전도금) 또는 전도자재대가를 보험증권에 기재된 내용과 보험약관에 따라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생긴 손해나 전쟁·내란·홍수 등과 같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생긴 손해 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계약후 알릴의무] ①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계약자의 변경
 3. 피보험자의 변경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 ② 회사는 제1항에 따라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 ③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④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으로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양도] 보험의 목적의 양도는 회사의 서면동의 없이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며, 회사가 서면 동意的한 경우 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양도한 것으로 합니다.

[손해의 방지와 경감의무] ①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손해의 방지와 경감에 힘써야 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방지 또는 경감할 수 있었을 손해액을 보상액에서 뺍니다.

③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회사의 동의를 얻어 지출한 필요하고도 유익한 비용은 보험가입금액을 초과한 경우라도 회사가 보상하여 드립니다.

[소멸시효] 보험금청구권 또는 보험료반환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준거법]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보상서비스

-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홈페이지(www.sgic.co.kr)** 또는 보험금청구접수부서를 통해 보험금 청구 관련 필요서류를 제출(방문 또는 우편접수가능)하시면 보상심사가 진행됩니다.

보험금청구접수부서(담당부서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서울보상1센터	02-3671-8115
※'보험금 청구 및 지급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신속하고 정확한 보상심사를 위해 심사자료 추가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인터넷, 우편,방문)	▶ 접수 & 보상담당자 지정	▶ 보상심사
		▶ 보험금 지급여부 결정

- 'SMS'·'e-Mail' 발송에 동의하시면, 담당부서 및 연락처, 보상심사 진행사항 등 필요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부터 '자료제출', '담당부서 조회' 및 '진행사항 확인'까지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경로 : 홈페이지(www.sgic.co.kr) > 보상서비스 > 보상안내 / 보험금 청구 / 보상자료 제출

[계약자교부용]

선금보증보험 보험료 영수증

(고객 교부용 청약서 포함)

증권번호 제 100-000-2024 0292 7241 호

보 험 계 약 자	417-70-01307 761009-1***** TK트래블 강일구	피 보 험 자	211-82-11699 (사단)한국관광개발연구원	
보험가입금액	금 일천오십육만 원정 ₩10,560,000-	보 험 료	₩85,420-	
보 험 기 간	2024년 06월 2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187 일간)			
보 증 내 용	선금 반환보증			
특 별 약 관	1. 신용카드이용보험료납입특별약관 보통약관 및 이 보험계약에 적용되는 특별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계약내용] 주계약명2024 인바운드 전문기업 지방관광 특화상품 개발 및 운영 계약기간2024년 06월 18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계약체결일자 계약금액₩26,400,000- 선금금액₩10,560,000- 지급예정일자				
총영수보험료	₩85,420-	제 3 자 납 부 액		
영 수 보 험 료	₩85,420-	제 3 자 보 험 료 납 부 내 역	주민(사업자)번호: 성명(상호):	
보험대리점명	(주)인슈게이트 (02-2051-2114) 박혜경	※ 보험증권 사서함을 이용하시면 고객이 SGI서울보증 홈페이지(www.sgic.co.kr)에서 보험증권을 직접 출력할 수 있습니다. ※ 사서함번호 : 2024-0374 1453		
증권발급부서	역삼지점 (02-569-0041) 김효녀			
회사사업자번호	120-81-13002			

알아두셔야 할 사항

[계약후 알릴의무] ①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와 같은 사실이 생긴 경우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없이 서면으로 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보험가입증서)에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1. 청약서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변경이 생겼음을 알았을 때
 2.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변경
 3. 주계약 또는 법령상 의무의 금액, 기간 등 회사의 보험금 지급의무 발생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②회사는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변경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보험료를 더 받거나, 돌려드릴 수 있습니다.
 ③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1항에 따라 변경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회사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회사는 주계약 또는 법령상의 의무를 변경시킴으로써 증가된 손해는 보상하여 드리지 아니합니다.
 ④보험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회사가 알고 있는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등기우편 방법에 의해 계약자에게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는 계약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소멸시효] 보험료 환급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보험료의 환급] 보험사고 발생 전에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거나, 회사의 책임이 소멸되었음을 증명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한 때 등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료 환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 환급보험료는 기납부한 보험료에서 경과보험료(최저보험료가 경과보험료보다 많은 때에는 최저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이 상품의 최저보험료는 [15,000원]입니다.

[계약의 무효] 보험계약을 맺을 때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을 경우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개발원이 매월 공시하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분쟁의 조정] 보험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 분쟁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8조에 의거,
(세금)계산서 발행없이 보험료 영수증을 세법상
지출증빙 서류로 사용가능합니다.

면세
사업

상기 금액을 영수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서울보증보험주식회사

서울 중로구 김상옥로 29(연지동,보증보험빌딩)

대표이사
장

이영준



SGI was rated "A+(stable)"
by S&P Global Ratings

"AA-(Stable)"
Fitch Ratings



한국서비스품질우수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서비스진흥협회

ISO 37301
ISO 37001

준법경영시스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한국경영인협회 인증기업